


<h1>보도자료</h1> <p>2022. 6. 10.</p>		<h2>양형위원회</h2>
	문의	운영지원단장 범선윤 (☎ 031-920-5601)

양형연구회 제8차 심포지엄 개최

주제: 「벌금형 양형기준의 모색」

■ 개요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2022. 6. 10.(금) 『벌금형 양형기준의 모색』을 주제로 제8차 심포지엄을 개최함
-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향후 양형위원회가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 되는 ‘형종(자유형/벌금형) 선택의 기준’과 ‘벌금형 산정의 기준’을 모색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2. 6. 10. (금) 14:00~18:00
- 장소: 대법원 4층 401호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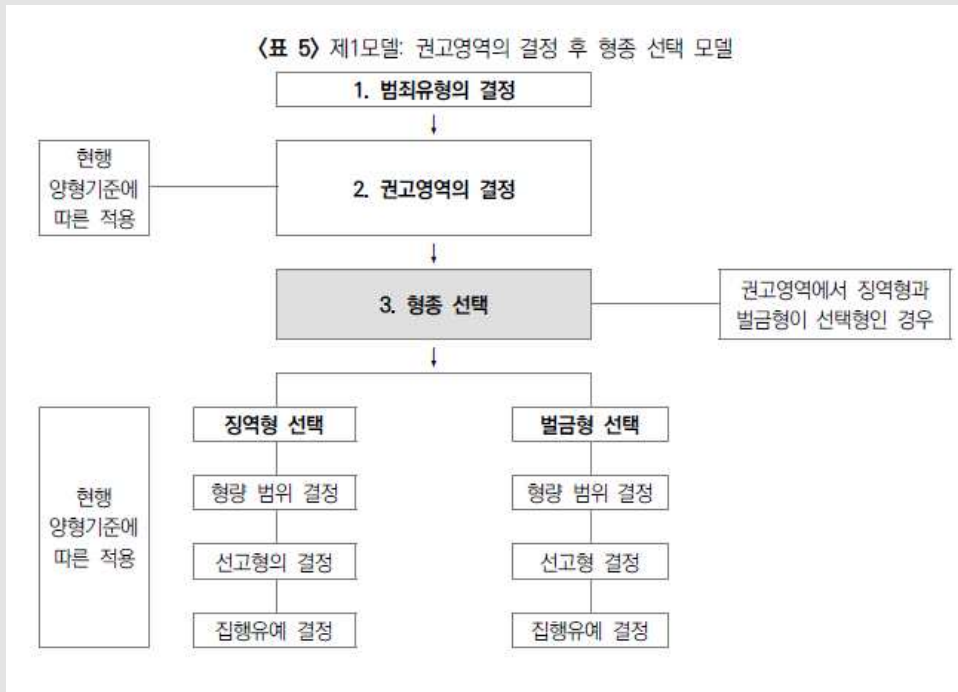
■ 제1세션 「형종(자유형/벌금형) 선택의 기준」 발표 및 토론내용

- 사회 :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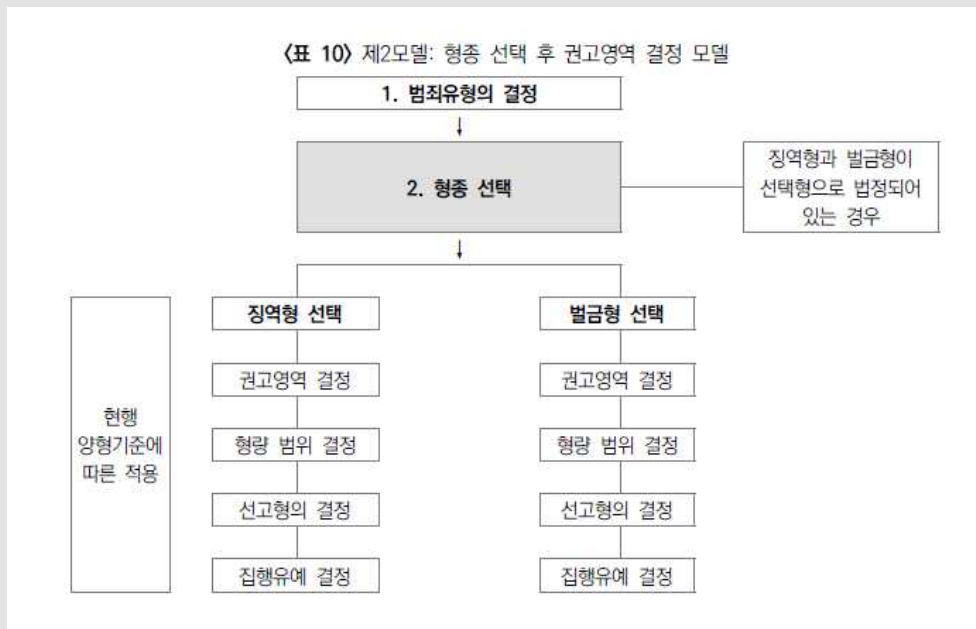
①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발표 요지

- 형종 선택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크게 ① 권고영역 결정 후 형종을 선택하는 모델(이하 ‘제1 모델’)과 ② 권고영역 결정 전 형종을 선택하는 모델(이하 ‘제2 모델’)로 구분

① 제1모델: 권고영역 결정 후 형종 선택 모델



② 제2모델: 형종 선택 후 권고영역 결정 모델



- 구체적으로, ① 범죄유형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고영역을 설정하고, ② 권고영역에서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모든 범죄군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형종 선택을 위한 공통 원칙을 제시하되, 일부 범죄군에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을 제시하며, ③ 형량범위 결정

을 위한 양형인자와 별도로 형종 선택을 위한 특별양형인자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형종 선택의 기준 예시(교통범죄)]

〈표 11〉 교통범죄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벌금형 구간	벌금형과 징역형 중첩구간		징역형 구간
			감경	기본	기준
1	교통사고 치상	벌금	① - 8월, 벌금	② 4월 - 1년, 벌금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벌금	③ 4월 - 1년, 벌금	8월 - 2년	1년 - 3년

【형종 선택을 위한 공통원칙】

- 중한 형법부과는 가급적 억제하고 경한 형법만으로도 형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면 벌금형을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징역형은 해당 범죄의 불법과 책임이 중대하여 벌금만으로는 정당한 형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징역형 선고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
-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벌의 효과에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표 12〉 징역형에 대한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이자 - 상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표 13〉 형종(자유형/벌금형) 선택인자

구분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
형종 선택 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예) -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을 한 경우(예)	※ 벌금형 긍정적 요소가 있거나 긍정적 요소가 일정 개수 이하일 경우 징역형 선택 가능
	행위자 /기타	- 미성년자(예)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예) - 형사처벌 전례 없음(예)	

② 이혜량 판사(수원지방법원 판사)의 지정토론 요지

- 제1 모델이 구체적·결과적 타당성이 있으면서 양형 현실에도 들어맞아 바람직함
 - 권고영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특별양형인자는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토대로 입법자의 의사, 국민의 양형 인식, 양형정책적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출된 것이어서, 형종 선택에 있어서부터 중요하게 고려됨
 - 대체로 실무상 감경,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중 영역에서 금고 또는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제1 모델은 실무에도 들어맞음
 - 기존의 권고영역을 활용하는 것이 간명하고 예측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형종 선택을 위한 공통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고, 추상적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기준 설정의 의미 자체가 퇴색하는 한계가 존재함
- 제1 모델의 단점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벌금형 선택에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제시하거나 벌금 형량 산정의 기준을 활용하여 보완

③ 정효민 검사(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의 지정토론 요지

- 형종 선택의 기준으로 모든 범죄군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설정하되 각 범죄군 별로 그 특성에 따라 개별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누범 기간 또는 자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무상 형종 선택 단계에서 고려되고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과 ‘피고인의 직업 상실 여부’를 양형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④ 최준혁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정토론 요지

- 제1 모델과 제2 모델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제1 모델을 취하는 편이 바람직함
- 형종 선택을 위한 양형인자 신설의 경우 ① 개별 범죄별로 제시하는 방식이 적용상 용이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②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형기준 책자의

부록인 ‘양형기준 해설’에 형종 선택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서술하는 방법도 상정 가능함

■ 제2세션 「벌금형 산정의 기준」 발표 및 토론내용

○ 사회 :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① 강우에 교수(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의 발표 요지

○ 우리나라의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에 참고될 수 있는 미국 연방의 벌금형 관련 법률과 판례 및 벌금형 양형기준을 분석

[발표문의 주요 내용]

- 미국 대다수 처벌규정 및 양형기준에서는 범죄행위와 범죄결과의 중대성에 상응하여 벌금형의 형량범위를 설정함
- 미국 연방 양형기준 중 개인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의 적용 단계
 - ① 기본적 위반 수준 산정(각 범죄별 위반행위에 따른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행위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 요인에 따라 점수를 추가함)
 - ② 위반 수준에 상응하는 벌금형 형량범위 결정
 - ③ 조정(피해자 관련 요소, 행위 시 역할, 사범방해, 복수의 범죄행위, 책임의 수용 등 요소를 반영하여 위반수준을 상향 또는 하향함)
- 미국 연방 양형기준 중 단체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에서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벌금 부과기준을 달리하는데, ① 목적과 활동이 범죄와 결부되어 있는 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 모두를 박탈할 수 있는 액수의 벌금을 가할 수 있고, ② 기타 일반적인 단체의 경우 개인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과 같은 적용 단계를 거쳐 벌금액을 정하도록 함
- 시사점
 - ① 미국 연방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양형요소를 고정된 점수와 양형기준표로 정형화시킴으로써 이탈율 증가의 원인이 된 점은 경계하여야 함
 - ② 벌금형에 대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의 경우 행위자 요소(지위, 성격, 능력)를 중시하고 있음
 - 행위자의 벌금 납부능력을 벌금형 산정의 주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 양형절

차에서 피고인의 벌금 납부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벌금액수가 자력에 비추어 과도하면 안 됨

- 단, 피고인의 전과는 기본적 위반 수준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위반 수준을 상향조정하거나 위반 점수를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을 뿐임

③ 미국 법령이나 양형기준에서는 벌금형 산정에 있어 사후적인 보상이나 비용 문제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음

② 장태영 판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판사)의 지정토론 요지

○ 미국 연방 양형기준의 내용을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에 수용·참작함에 있어서는 범죄군별 개별적 양형기준이라는 우리 제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부분을 선별할 필요가 있음

○ 벌금형 양형인자로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법체계는 ‘총액 벌금형’(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총액 형태로 부과)을 채택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제도가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벌금형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경제력을 참작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양형기준에서 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벌금형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경제력을 양형인자로 반영한다고 하였을 때, 경제력의 명확한 의미와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양형심리에 많은 혼란과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력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 비용,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피해회복 및 동종 벌금형 전과는 벌금형 양형인자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③ 임재웅 검사(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의 지정토론 요지

○ 벌금형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구형의 기준이 되는 유사 사건과의 형평, 응보 및 예방적 효과, 범죄행위로 취득한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소득이나 자산, 피해회복 여부 등이 주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 입법론으로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제한 또는 대체집행 제도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액수 이하의 벌금미납자가 성실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벌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노역장 유치를 제한
 - 현행법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 경우에만 일정한 요건 아래 대체집행으로서 사회봉사가 허용되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미납자 등에 대하여 대체형 집행제도를 확대함이 적절함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록상 중요 양형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법관이 검사에게 중요 양형사항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고 검사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쳐 보정사항을 회신하는 등 약식명령 심리절차에 고유한 양형심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④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지정토론 요지

- 미국식 벌금형 양형기준 도입 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예상됨
- **양형인자의 이중평가 문제** : 미국식 벌금형 양형기준에 따르면 ① 위반 수준을 결정하고, ② 위반 수준에 따른 벌금 형량범위 기준표에 따른 형량범위를 결정한 후 ③ 가중적 또는 감경적 조정을 함. 그런데 위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와 형량범위 결정 후 조정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의 중첩 가능성이 있음. 위반 수준의 결정 단계에서 점수를 가중하는 데 고려되었던 인자들이 조정 단계에서 다시 평가된다면 양형인자의 이중평가금지 원칙에 위반됨
 - **교정 비용 고려의 문제** :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벌금형 선고 시 부과될 수 있는 보호관찰 등 교정을 위한 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나, 국가가 형벌이라는 기본권 침해 작용을 독단적으로 행하면서 그에 드는 비용까지 부과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개인과 법인의 분리 문제** :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명백히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으로는 개인과 법인을 달리 평가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미국 연방의 경우 개인에 대한 형벌이 처벌(punishment)과 무력화·자격 박탈(incapacitation)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인에 대한 형벌은 원상회복(restitution)과 벌금(fines)이 핵심임. 따라서 형량을 정할 때도 개인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가장 먼저 고려되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여부'가 우선 고려됨.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하여 동일성 이론을 취하는 영미법계에서는 법인 처벌이 예외라고 할 수 없음

- 그러나 우리 법제는 양벌규정을 전제로 하여 특별법상 개인 처벌에 종속하는 법인의 선임·감독의무 위반이 법인 처벌의 핵심이 되고, 이 경우 과해지는 벌금의 형태도 법률에 따라 배수벌금제와 총액벌금제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특히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기소된 법인이 '범죄행위가 있던 시점에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준법감시·윤리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벌금 수위를 정하는 과실점수(culpability score)를 차감하나, 이는 개인과 법인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분리함을 전제로 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요소임. 개인과 법인의 벌금형 산정을 분리하지 않은 채 이를 도입할 경우 기업 대표자의 면책 또는 감경요소로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현행법상 총액벌금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수벌금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벌금형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는 일수벌금제와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향후 일정

- 제8기 양형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우선 교통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이후 개별 범죄군별로 순차적으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할 예정
- 오늘 심포지엄 논의 내용은 향후 벌금형 양형기준을 실제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